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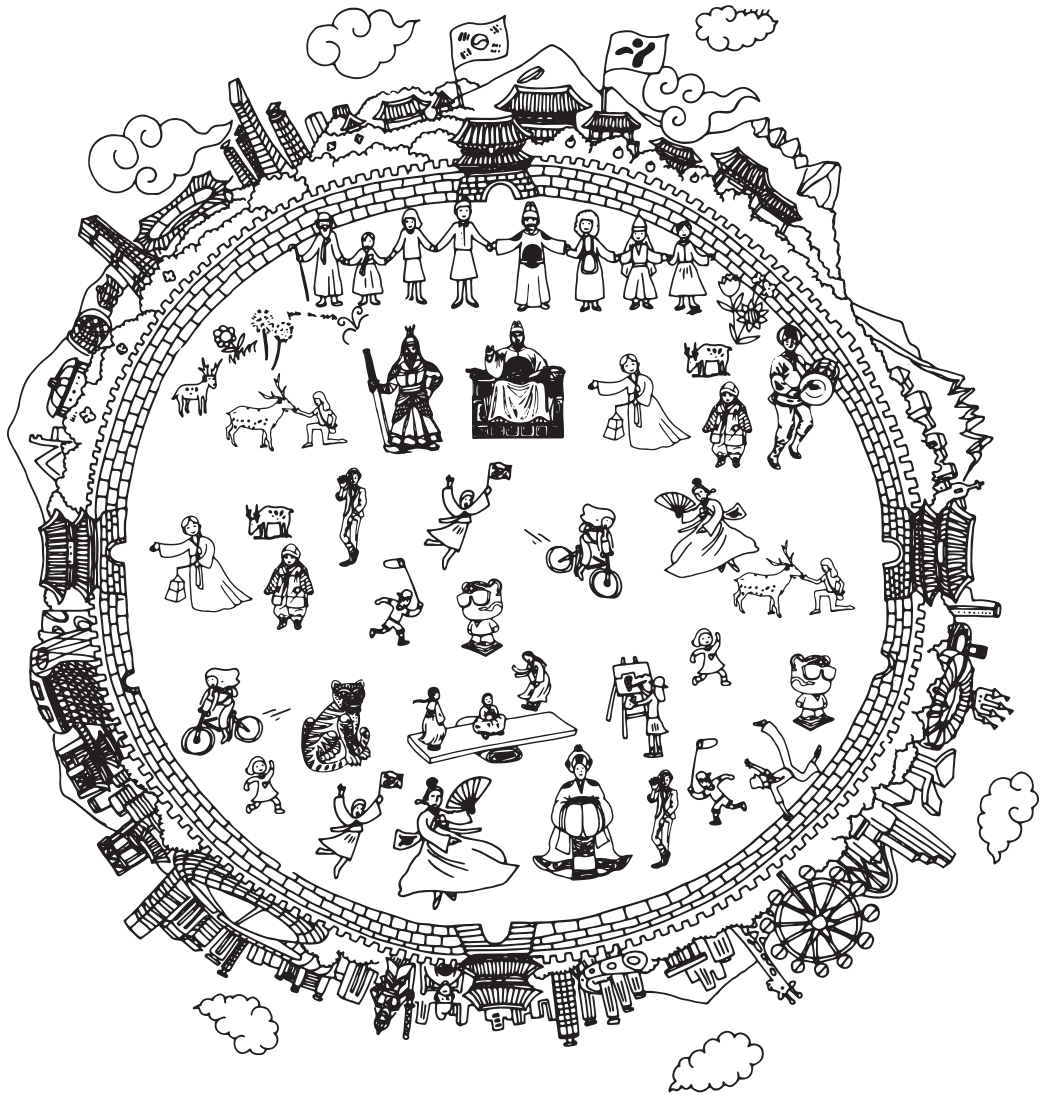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601호(그2)

2020. 8. 20.(목)



목 차

◆ 고 시

제2020-353호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고시	2
--	---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53호

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제한 고시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지역에서의 집회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8월 20일
서울특별시장

□ 집회금지 개요

가. 금지대상 : 서울특별시 전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

※ 집회는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함

나. 금지기간 : 2020년 8월 21일 00시부터 8월 30일 24시까지

다. 위반시 처벌 :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
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)

라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.

•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
•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기관의 장	
선 람	

공 람									